

#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9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(2023.3.28.)에 따른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3조)

나. 제2조의 부과대상 삭제(안 제3조에 포함)

다. 지역보건법 제22조 3항 및 제34조 1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추가(안 제3조에 따른 별표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3.7.26. ~ 8.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(2023.8.24.~25.)와 심의  
- 원안의결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##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

###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제2항”을 “제34조”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과태료 부과기준)”을 “(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4조제2항”을 “법 제34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부과대상) <u>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u></p> <p>1. <u>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</u></p> <p>2. <u>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</u></p> <p>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<u>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3</u> <u>4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부과대상) 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3조(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) <u>법 제34조</u>----- -----.</p>

[별 표]

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

□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.(기준일 : 처분일, 재적발일)
- 다.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.
- 라. 영업의 양도,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,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.

□ 개별기준

부 과 대 상	근 거 법 령	부과금액(단위:만원)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
1.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법 제34조제1항	600	1,200	2,400
2.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	법 제34조제2항 제1호	100	200	300
3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34조제2항 제2호	100	200	300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역보건법

제22조(정보의 파기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제23조(건강검진 등의 신고) ① 「의료법」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(이하 “건강검진등”이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제29조(동일 명칭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34조(과태료)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## 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75조(과태료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4. 제21조제1항·제39조의6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제6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20. 8. 4.>

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0. 8. 4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3조 관련)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다. 법 제21조제1항·제39조의6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4호	600	1,200	2,400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김순란
연락처	(033) 330 - 4820